

장비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2012. 1. 1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장심위”)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의 목적은 대학으로부터 배정받은 기술지원센터 예산 또는 정부 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심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는 사업은 부처수탁사업(표1)에 한한다.

② 대학 예산인 경우 기술지원센터 예산으로 도입·운영하는 장비에 한한다.

제4조(용어)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원 : 포항공과대학교 소속의 전임교수 또는 비전임의 해당분야 전문가
2. 외부위원 : 포항공과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제5조(위원회구성) 위원회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간사 1인을 둔다.
2. 내부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학과 및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을 추천하여 총장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
3.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기관장에게 1인을 추천 받아 총장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의 사임으로 승계한 신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소집/의결)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심의위원의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의결은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부결/보완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는 최소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년1회 또는 2회(전·후반기)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심의방법) ① 참석결의: 위원들이 한 장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참석결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결의: 위원들이 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조(심의제한) 외부위원은 정부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심의를 하며, 기술지원센터가 대학 예산으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처수탁사업 중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표4)에서 심의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도입에 관한 사항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에 관한 사항. 단, 부처수탁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표2) 선정에 관한 사항
4. 3천만원 이상의 유희·저활용·불용장비(표3)에 대하여 판정·승인하고 타 기관에 자산이관 등 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단종, 금액변동 등)
6. 기타 장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당지급) ① 참석결의 시 외부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 규정은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서면결의 시 외부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 심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외부 심의위원에게는 회의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표1] 장비심의위원회 도입심의대상 여부 판단기준

사업분류		사업분류 설명	심의대상 연구장비	심의제외 연구장비
연구기관지원사업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	모든 연구장비	
부처 수탁	순수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모든 연구장비
	시설·장비 구축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 건물 등의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		

[표2] 활용목적별 연구장비 분류

단독활용 장비	특수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장비로 주로 연구개발자가 직접관리하며 구입 구서(구입연구실)만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허용장비	타 연구자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연구장비로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연구장비
불용장비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 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장비로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관리되는 연구장비

[표3] 장비의 판정기준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1년동안 장비가동율(장비활용시간 기준)이 10% 미만인 장비(가동율이 낮아도 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불용장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장비의 물리적 성능이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장비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함

[표4]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상 여부 판단기준

사업분류	사업분류 설명	심의대상 연구장비	심의제외 연구장비
순수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구장비예산심의에서 심의 제외된 연구장비 - 금년도 신규과제로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금년도 계속과제 중 전년도 예산심의 시점에 연구책임자가 미정이었던 과제(전년 하반기 신규 협약과제)로 구축하려는 장비 ○ 연구장비예산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 중 해당장비의 단종, 구축포기, 30% 이상 금액변경 등 변경심의가 필요한 연구장비 	연구장비 예산심의를 받았던장비

연구기관 지원사업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 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	-	모든 연구장비
시설·장비 구축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 건물 등 의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		